# 개선내용 공개안

**1. 금융회사명** : 전북은행

**2. 조치일 : 2019. 7. 22.**

**3. 조치내용**

| 대 상 | 내 용 |
|---|---|
| 기 관 | 개선사항 3건 |

**4. 조치대상사실**

**가. 개선사항**

**(1) 고객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**

① 국가위험, 고객위험 및 상품위험 등을 반영하여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면서, 고객확인정보 입력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및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, ㉠외국인고객의 국적정보를 '기타'로 입력하여 국가위험도가 '중위험'으로 처리됨에 따라 일부 고위험국가 국적자에 대한 고객위험이 낮게 평가되는 한편, ㉡일부 신규상품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지연 입력하여 일괄적으로 '중위험'으로 잘못 평가되는 사례가 있었으며,

고객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, ㉢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업종인 대부업을 중위험으로 분류하고, ㉣대여금고 이용약정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일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

고객확인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정보 입력내용 및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

② 법인고객에 대하여 고객거래확인서 및 관련증빙(주주명부 등) 징구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였음에도 ㉠'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'에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으로 입력하거나 ㉡실제소유자 지분율을 (주주명부 등)과 상이하게 입력한 사례가 있으며,

비영리법인 고객의 설립목적을 관련증빙(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등)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㉢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㉣잘못 입력한 사례가 있으므로

법인고객 확인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, 고객정보 등록화면상 비영리법인 고객의 설립목적을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

**(2)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**

해외 체크카드 거래, 대여금고 이용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,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일부 거래유형에 대하여 의심거래 보고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가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

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 해당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내규상 의심거래보고 검토대상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람

**(3)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**

① 내규「자금세탁방지지침」에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, 직원알기제도 및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다음과 같이 일부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내규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- 직원알기제도 및 독립적 감사 담당자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담당부서 미지정

- 영업점에 대한 독립적 감사실시 주기, 환거래계약체결 및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권자 미지정

② 2018.8월부터 ○○○○ 현지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월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, 동 체크리스트가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업무 취급실적*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

*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건수, 고객확인의무 이행건수 등

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의 적정성(내부통제구조, 고객확인의무, 고객위험평가, 의심거래 등 보고의무 등의 적정성)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체크리스트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